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주은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14.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20,000주(1주의 액면금액 10,000원), 자본금 총액은 200,000,000원이다.
- 2)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인 2013. 8. 14.부터 2019. 8. 14.1) 까지 원고의 사내이사(2013. 8. 14.부터 2016. 8. 14.까지는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로 재직하였고, 2016. 8. 14. 이전에 원고의 임원으로는 피고 이외에 사내이사 C, 감사 D이 있었다.

나. 피고의 프린팅 기계 이전, 원고와의 부동산 거래 등

- 1) 원고는 2013. 10. 17.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1. 마쳐졌다).
- 2) 피고는 위 무렵 피고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인 ‘F’의 프린팅 기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가져와 두었다.
- 3) 한편, 피고는 2016. 2.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 1) 원고의 주주이던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H(1,200주), I(800주)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사인 피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제소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상법 제403조에 의한 주주의 대표소송으로서, 2021. 9. 1.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511,725,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③ 피고가 2013. 10. 17.부터 2021. 8. 31.까지 94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564,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 9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1가합344). 한편,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21. 10.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라는 제목의 신청을 제출하며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G도 2021. 9. 7. 유사한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 G의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2) 위 제1심법원은, 위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법 제39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인 689,792,8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H, I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H, I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22나22042), 위 항소심법원은 2023. 1. 31. 피고의 항소 및 H, I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3다223225, 이하 위 사건의 전체 심급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21.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17.부터 2016. 2.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204,400,000원[= 차임 월 7,300,000원(일부 건물 부분에 관한 2,300,000원 + 토지 부분에 관한 5,000,000원) × 2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항변

H, I이 원고를 위한 주주의 대표소송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물로 주장하고 있는 2013. 10. 17.부터 2016. 2. 24.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이미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 참가한 바 있는데 원고가 별소로서 위와 동일한 이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주 또는 이사이던 G, C으로부터 프린팅 기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겨와 사용하자는 요구를 받아 이에 응하여 프린팅 기계를 이전하였던 것일뿐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중복소송의 금지). 한편,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인 H, I이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로서 참가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의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일부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피고의 2013. 10. 17.부터 2016. 2.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서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나중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배된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철희, 판사 박가현, 판사 서정희

별지

1. 순천시 J 공장용지 6,311㎡

2. 순천시 K 공장용지 301㎡

3. 순천시 J 지상 제나동호

[도로명주소] 순천시 L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소 99.36㎡

4. 순천시 J 지상 제가동호

[도로명주소] 순천시 L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및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1,140㎡

2층 540㎡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사 8.6㎡, 끝.

1) 다만, 위 퇴임에 관한 변경등기는 2021. 9. 2. 이루어졌다.